식자재(부식) 구매계약 특수조건

- **제1조(적용)** 이 조건은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식자재(부식)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.
- 제2조(공급품명) 구입물품(첨부문서) 내역서에 의한다.
- 제3조(공급단가)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"을"이 "갑"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.
- 제4조(계약기간) 2023.01.01. ~ 2023. 12. 31.(12개월)
- 제5조(급식공급업체)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, 냉동·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한다.

제6조(공급방법)

-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"갑"의 발주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"갑" 이 발급한 발주서에 의거 <u>①08:30~09:00(목, 금)</u> ②11:00~12:00(월~ <u>금)</u>에 시설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감독관(담당사회복지사, 조리사)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"갑" 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①09:30 ②12: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.(단, 주문한 품목 중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)
- ④ 식자재(부식)는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,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%를 적 용하고 경고 조치한다.(단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⑤ "을" 은 냉동·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(위생관리)

- ① "을"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② 품질의 평가 즉. 검수평가는 "갑"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.
- ③ "을"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며,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.
- ④ "을"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, 납품시 "갑"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제8조(식품검사 및 검수)

- ① "을"은 "갑"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"을"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.
- ② "을"이 "갑"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"을"이 진다.
- ③ 또한, "갑"은 "을"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는 "을"이 부담한다.
- ④ "을"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"갑"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"을"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.
- **제9조(변 상)** 납품지연,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지체상금)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.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대금정산) "을"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월 2회 청구에 의해 정산하고, "갑"은 "을"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)

제12조(계약의 해지)

- ① "갑"은 "을"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.
- 1.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
- 2. 규격(품질, 양)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
- 3.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
- 4.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(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)
- 5.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(냉장・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)
- 6.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
- 7.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
- 8.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② "갑"은 "을"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(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)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, 또한 "을"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

- 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"갑"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"갑"은 "을"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.
- 제13조(의무면제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"갑"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,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.
- **제14조(권리의무양도등)** "을"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, 하도급(하청)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5조(승낙사항)

- ① "을" 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.
- ② 계약 후 "갑"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·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, 물품내역서,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"을"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조건이 됨을 승낙한다.

제16조(조문해석 및 기타)

- ① 본 계약에 관하여 "갑"과 "을"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"갑"의 해석에 의한다.
- ② "을"은 계약기간 중 "갑"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18조(기타사항)

- ① 계약상대자는 【별표2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.(단,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"을"이 모든 책임을 진다.)

부 칙

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1. 검사·검수 및 반품 기준

- 가.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.
- 나.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.
 - (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, 선도, 모양, 개별 포장상태, 유통기한 등의 확인 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.)
- 다.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,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,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,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월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 를 즉시 교체함.

라.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

1)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(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),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 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.

[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]

가. 공통 기준

- 1)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.
- ①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·냉장차(가동중인)로 운반하며,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·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.
- ②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.
- ③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,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.
- ⑤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검수대에 놓는다.
- ⑥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.(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)
- ⑦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.
- ⑧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. (단,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)
- 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.
 - 냉장식품 : 10℃이하
 - 냉동식품 : 냉동 상태유지(-18℃이하), 녹은 흔적,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
 -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: 10℃이하
 - 일반채소 : 15~25℃ (상온)
- ⑩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.

나. 품목별 기준

1) 농산물류(과일포함)
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제15조 및 「대외무역법」제23조에 따라 "원산지" 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. 다만,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.
- "표준규격품"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"상"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.

- 다만,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"상"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.
-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"상"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. <예시>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"상"에 준함.
-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- 전 처리된 채소의 : 제품명, 업소명,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,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.